

재정과

제1절 지방세 관리

1. 지방세수 여건

우리군 지방세 세수현황은 2008년도 18,800백만원에서 2009년 19,31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도세는 647백만원이 더 징수되었으나 군세는 133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514백만원이 더 징수되었다.

이는 경상북도 신 도청 유치를 계기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였으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단계별 현실화,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증가가 있었지만 법인세 및 소득세의 세율인하에 따른 주민세 감소가 전년보다 군세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2009년에는 지방세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완공될 대단위 산업시설이나 건설 중인 공동주택 등 세수 증기를 가져올 특별 요인이 없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으로 부동산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취·등록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으로는 물가상승과 과세표준액 현실화를 고려하면 지방세수는 현상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양수력발전소 건설사업 및 경북도청 이전 사업이 완공되면 지방세수의 안정적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 토지 : 262,533필지 661,469천m²

과 세		비 과 세	
필 지	면적(천m ²)	필 지	면적(천m ²)
178,540	519,575	83,993	141,894

나. 건물 : 47,736동 3,554천m²

과 세		비 과 세	
동 수	면적(천m ²)	동 수	면적(천m ²)
45,226	2,739	2,510	401

다. 자동차 : 17,448대

(단위 : 대)

계	과 세 대 상				비 과 세 감면대상
	소 계	관 용	영업용	자가용	
17,448	16,259	104	396	15,759	1,189

2.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부과액	징수액	비율	부과액	징수액	비율	부과액	징수액	비율	부과액	징수액	비율	부과액	징수액	비율	
합 계	14,261	13,643	96	15,370	14,550	95	17,095	16,123	94	19,670	18,800	95	20,330	19,314	95.0	
도	소 계	5,839	5,637	97	6,023	5,843	97	6,958	6,756	97	8,575	8,343	97	9,291	8,990	98.6
	취득세	1,689	1,654	98	1,637	1,610	98	1,926	1,896	98	2,776	2,708	97	3,206	3,126	97.5
	등록세	1,741	1,738	100	1,817	1,815	100	2,274	2,272	99	2,745	2,735	99	2,984	2,981	99.9
	면허세	39	38	98	39	38	98	47	46	97	46	45	99	46	45	97.4
	공 동 시설세	146	140	95	163	151	93	180	168	93	189	178	94	179	162	90.8
	지 역 개발세	1	1	100	2	2	100	4	4	100	8	8	100	6	6	100
	지 방 교육세	2,029	1,997	98	2,176	2,156	98	2,338	2,289	97	2,630	2,583	98	2,669	2,608	97.7
	과년도	194	69	35	169	71	42	189	81	42	181	86	47	201	62	31.1
군	소 계	8,423	8,007	95	9,346	8,707	93	10,137	9,367	92	11,095	10,457	94	11,039	10,324	93.5
	주민세	1,404	1,388	99	1,874	1,600	85	1,806	1,744	96	2,129	2,028	95	1,877	1,789	95.3
	재산세	836	801	96	993	949	96	1,096	1,032	94	1,210	1,158	95	1,256	1,190	94.8
	자동차세	1,514	1,426	94	1,690	1,581	94	1,863	1,729	92	2,075	1,943	93	2,287	2,115	92.5
	주행세	1,247	1,247	100	1,235	1,235	100	1,369	1,369	100	1,381	1,382	100	1,613	1,614	100
	도축세	220	167	76	151	151	100	245	245	100	391	392	100	349	349	100
	담 배 소비세	2,511	2,511	100	2,656	2,656	100	2,683	2,683	100	2,879	2,879	100	2,737	2,736	100
	중 합 토지세	폐지			폐지			폐지			폐지			폐지		
	농 업 소득세	5년간 중단			5년간 중단			5년간 중단			5년간 중단			5년간 중단		
	도 시 계획세	244	232	95	272	259	95	290	275	94	322	315	97	313	301	96.6
사업소세	86	85	99	108	107	99	134	130	97	159	148	92	163	156	95.4	
과년도	360	150	42	368	169	46	651	160	24	549	212	38	443	74	16.6	

가. 연도별 증감추이(정수액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 체 (증감율)	14,816 (17.0)	13,645 (-8.0)	14,550 (6.6)	16,123 (10.8)	18,800 (15.9)	19,314 (2.7)
도 세 (증감율)	6,689 (21.8)	5,638 (-15.7)	5,843 (3.6)	6,756 (15.6)	8,343 (23.5)	8,990 (7.7)
군 세 (증감율)	8,127 (13.4)	8,007 (-1.5)	8,707 (8.7)	9,367 (7.5)	10,457 (11.6)	10,324 (-1.3)

3.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보관 시스템 구축

가. 추진배경

- 1) 지방세 증빙서류 및 영수필통지서 10년간 보관으로 문서고 협소
- 2) 일일수납 영수필통지서를 개별확인 후 일자별 세목분류(1일 1여건 분류)
- 3) 납세자 수납확인 요구 및 서류제출에 따른 따른 문서 검색시 방대한 보관 자료를 수작업으로 찾아야 함으로 많은 행정력 낭비

나. 추진성과

- 1) 시스템구축(관리운용 S/W 및 H/W 구입설치 : 2009. 11. 12)
- 2) 시범운영 : 2009. 11. 30
- 3) 정상운영 : 2009. 12. 01
- 4) 생산된 문서의 이미지 전자화
 - 영수필통지서 및 과세내역서 - 약 10만매

다. 기대효과

- 1) 납세자의 증빙서류 및 영수증 등 자기 자료 요구시 신속대응 가능으로 세무행정 신뢰 및 납세 편의도모

- 2) 지방세 영수필통지서의 분류 및 보관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
- 3) 발전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알 권리 보호에 기여

4. 지방세 카드납부 시행

가. 추진배경

- 1) 납세자에게 편리한 납부방법 제공
- 2) 국세 및 타 시·군 도입에 따른 지방세 납부방법 형평성 대두
- 3) 현대 사회인의 대중적 결재수단을 지방세 납부에 도입

나. 추진성과

- 1) 대상 카드사 : 현대, 삼성, 신한(구LG), 비씨카드
- 2) 카드납부실적 : 682건 / 680백만원

다. 기대효과

- 1) 분할납부 및 결재일까지 납기연장 효과로 납세자 편의증진
- 2)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체납발생 방지로 징수율 제고
- 3) 전자정부 활성화 기여 및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5. 관외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가. 징수팀 구성 및 인력현황

- 1) 총괄책임자 : 재정과장
- 2) 1팀(수도권 및 기타) : 팀장 - 징수담당외 2명
- 3) 2팀(대구, 경북지역) : 팀장 - 재산세담당외 2명

나. 추진현황

- 1) 고액, 고질 관외채납자 직장 및 거주지 방문독려
- 2) 보험가입자 조사를 통한 대포차 추적 및 차량강제 인도
- 3) 도 주관 합동징수팀 참여로 타 시·군과 채납자료 공유

다. 추진성과

- 1) 체납액 징수 : 184백만원(현년도 110, 과년도 74)

라. 기대효과

- 1) 현지출장 집중 독려로 관외채납 징수율 제고 및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 2) 채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채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6.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가. 근 거

-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2)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해양부 지침)

나. 조사개요

- 1) 조사기준일 : 연2회(1월 1일, 6월 1일)
 - 1월 1일 기준 : 전체 개별주택 대상
 - 6월 1일 기준 : 1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증축 주택 등
- 2) 조사대상 : 17,482호(단독, 다가구, 주상복합건물내 주거용 주택)
- 3)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연2회(4월 30일, 9월 30일)
- 4) 조사자 : 54명(공무원 24, 보조원 26, 지도반 4)

다. 조사목적

- 1)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함으로써 주택가격에 대한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
- 2) 조사의 정확성 및 가격의 균형유지로 신뢰받는 공시가격 확립을 통하여 공평과세 실현

라. 조사결과

- 1)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현황 : 17,272호
- 3) 이의신청 및 정정가격 조정공시 : 27호
(이의신청 : 20호, 정정가격 : 7호)

마.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1)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2) 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7.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추진

체납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리대책을 강구하고자 체납세 정리를 2009년도 지방세정 분야 역점시책으로 설정하고,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가. 추진목표 : 현년도분 97%, 과년도 30% 징수

- 1) 추진방침
 -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등 효율적인 징수대책 강구
 -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강화

- 징수불가능분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 고질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인터넷공매 실시

나. 체납세 정리실적

- 1) 징수목표 : 208백만원
- 2) 정리실적 : 187백만원

다. 강제징수 실적

1) 부동산 압류	:	85건	108,485천원
2) 자동차 압류	:	675건	332,805천원
3) 예금 및 급여압류	:	38건	81,151천원
4) 자동차번호판영치	:	10건	27,907천원
5) 공매실시			
○ 토지 및 건물	:	36건	10,345천원
○ 자동차	:	15건	24,305천원
6) 신용정보등록	:	1건	92,471천원

라. 실익없는 채권 결손처분 확행 : 1,275건 148백만원

- 1) 배분금액 부족 : 127건 16백만원
- 2) 행방불명 : 378건 8백만원
- 3) 무 재산 : 463건 115백만원
- 4) 시효소멸 : 307건 9백만원

제2절 세외수입 관리

1. 세외수입 현황

우리군 세외수입 총 징수액은 102,721백만원으로 목표액 101,805백만원 대비 100.9%, 부과액 105,131백만원 대비 97.7%의 높은 징수실적을 거양하였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 88,168백만원에 비하여 총액이 14,553백만원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지만 2008년 결산 결과 각종사업의 이월금 16,354백만원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이자율 하락과 계속되는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보유액이 줄어들면서 공공예금이자가 3,891백만원으로 작년대비 345백만원이 줄었고 상리곤충연구소 입장권수입이 66백만원, 호박벌 특화작목육성으로 인한 사업장생산수입이 128백만원, 청소년수련관 및 온천 사용료수입이 1,488백만원, 수렵장운영에 따른 수렵장사용료 293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입액은 감소 추세이다.

향후 지방세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개별법령에 규정된 관련자료를 연찬하여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발굴하여 개척한다면 세외수입의 확충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가.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05	'06	'07	'08	'09
세외수입	69,760	71,967	66,972	88,168	102,721

나. 2009년도 세외수입 징수내역 : 102,72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비고
계	7,138	계	95,583	
재산임대수입	165	재산매각수입	172	
사용료수입	1,582	순세계잉여금	19,662	
수수료수입	402	이월금	73,425	
사업장수입	857	전입금	1,741	
징수교부금	240	부담금	15	
이자수입	3,892	잡수입	479	
		과년도수입	89	

제3절 회계 관리

1. 개 요

회계 관리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공공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조달 관리하는데 따른 모든 경제활동에 관한 경리 절차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발달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회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행정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2. 세출결산

가. 2009 회계년도 회계별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364,104	315,236	38,085	10,783
일반회계	344,871	304,596	31,197	9,078
특별회계	19,233	10,640	6,888	1,705

나. 2008대비 세출결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결산지출액	2008결산지출액	증 감	비 율
계	315,236	245,351	69,885	128
일반회계	304,596	237,817	66,779	128
특별회계	10,640	7,534	3,106	141

3. 계약집행 현황

2009년도 시설공사는 계약 집행 실적기준 총 276건 51,216백만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무이지구 배수장설치공사, 미호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장송교 개체공사, 유천면 종합 복지회관 신축공사,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등 주로 주민생활과 소득증대 사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와 예천골프 연습장 신축공사, 포리 관광지 조성사업, 회룡포 지구 개발 사업, 충효 테마공원 조성 사업, 도청 유치 기념 상징 누각 건립공사 등 관광 및 지역균형 개발에 역점을 둔 사업이라 하겠다.

2009년도 계약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방법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76	51,216	125	23,195	151	28,021	0	0
경쟁계약	232	45,533	51	9,637	116	21,526	0	0
수의계약	44	5,683	74	13,558	35	6,495	0	0

※ 계약금액 공사 5천만원, 용역·물품(관급자재 제외) 3천만원 이상

제4절 재산관리

1. 국유재산

가. 현 황

우리군은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종래의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재산관리에서 탈피하여 「확대·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전환하여 장래의 행정수요와 국민복지 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재산의 매각 등 처분은 억제하고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대부, 교환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을 최대한 증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9년 12월말 현재 국유재산은 1,207필지 775천㎡로서 재산가액은 4,383,482천원이며 국유(일반)재산 활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9년도 국유(일반)재산 활용 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대장가액(천원)
1. 총보유재산(1+2+3)	1,207	775,210	4,383,482
2. 활용가능재산(1+2)	816	621,895	3,695,838
3. 활용중인재산(1)	732	570,093	3,417,036
4. 미 활용재산(2)	84	51,802	278,802
5. 활용불가능재산(3)	391	153,315	687,644

나.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2009년 국유재산 대부료는 732필지에 570천㎡ 54,112천원을 부과·징수하였고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6필지에 대한 2천㎡, 610천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다.

2009년도 국유재산 관리면적 대비 임대면적 현황

구 분	① 관리면적	② 임대면적	③ 비율(②/①)
임대면적(㎡)	775,210	570,093	73.54

다. 국유재산 관리계획

국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으로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개념이며 국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인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업무다.

2009년도 취득·처분 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금액(천원)	비 고
취 득	-	-	-	
처 분	23	33,875	485,211	

2. 공유재산

가. 현 황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09년 12월말 현재 대장가액으로 총 1,360억원으로 2008년말 대비 186억원이 증가되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 물적수단인 공유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운영과, 지방재정의 자립에 기여토록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목적 수행의 원활을 기하도록 공유재산을 관리하였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토지-천㎡, 건물-㎡, 가격-천원)

구 분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계 (가격)		135,993,175	126,139,251	9,853,924
토 지	필지수	23,295	22,324	971
	면 적	28,016	7,913	20,103
	가 격	78,237,690	72,113,390	6,124,300
건 물	동 수	322	302	20
	면 적	95,673	93,453	2,220
	가 격	54,450,501	53,943,682	506,819
입목죽	수 량	22,408	4,408	18,000
	가 격	3,271,904	82,179	3,189,725
유 가 증 권	수 량	6,616		6,616
	가 격	33,080		33,080

나.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대부계약 체결된 공유재산에 대해서 총367필지 944,780㎡ 30,649천원을 부과하였다. 사용목적별로는 주거용 100건, 경작용 248건, 기타 19건이다. 특히 대부료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납하게 함으로써 대부료의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희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타목적 사용 등 제반 문제를 파악코자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등록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각종공사 준공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재산 77필지 9,619㎡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을 완료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도모하였다.

라. 공유재산 처분 현황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군수가 취득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는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 처분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9년도 처분 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금액(천원)	비 고
처 분	4	2,958.9	79,955	

마.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 철저

대법원 등기전산자료를 공유하여 미관리재산의 적극적인 발굴은 물론 법령 또는 기부채납으로 취득 후 우리군으로 미등기된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로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법원 등기 자료와 공유재산 대장의 불일치 자료를 대조하여 은닉재산 발굴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3. 유천면사무소 창고전립

가. 사업의 필요성

유천면사무소내에 위치한 기존 부속창고는 지상1층, 연면적 182.40㎡로서 1973년에 축조되었으며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해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노후되고 빗물이 바닥으로 유입되는 등 위민행정의 구현을 위한 필수적 기자재의 보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기존 부속창고의 철거 및 개축을 통한 청사 환경개선과 업무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유천면사무소 창고건립 추진실적

청사 환경개선과 대주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획된 본 사업은 172백만원의 예산으로 2009. 03. 19 착공하여 3개월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06. 17 준공하였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존 부속창고 182.40㎡를 철거하고 일반철골조 조립식판넬 지붕으로 258.75㎡을 개축하였으며 건물 뒤편 부지경계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강우시 건물로의 빗물 유입을 차단토록 하였다.

개축된 창고는 필요한 용도별로 분류하여 장비보관소, 총무·산업담당 및 건설자재 창고와 주민투표소, 체력단련장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창고로 구성되었다.

